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대비  
손해사정이론

정인식 지음



제 2024BD 호

# 합격증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2024년 시행 신체  
손해사정사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였  
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월 일



금융감독원 장





손해사정업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론적 근거로서 손해사정이론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손해사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다른 1차 과목에 비해 정확히 정해진 시험범위가 없고 보험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출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험출제시에는 제한적으로 출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출제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시험은 쉽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2014년 신체손해사정사 1회시험 이후 약 10년간 출제경향을 토대로 1차시험의 기준에 맞춰 기본이론 부분과 기출문제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시험은 모두 객관식 문제로서 객관식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문제풀이를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하여 한번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1차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하고 문제풀이에서 마무리 암기노트작성까지 한번에 한다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손해사정이론 역시 고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손해사정이론은 다른 1차 과목인 보험계약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간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2차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1차시험을 합격해야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1차시험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2차시험을 준비할 체력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문제풀이를 연동하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최소의 시간을 들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문제를 많이 풀고 다독하는 것만이 수험생들의 1차 과목의 합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장기간 레이스에 시작한 1차과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까지 체력관리 잘하시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재 한편으로 손해사정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험준비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출제범위가 넓게 확대되어 출제가 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시험준비를 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에서 추렷되다 보니 교재에 없는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으나 기존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만 제대로 소화한다면 본인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의 문턱에 들어선 수험생들의 목표를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1. 최근 10년간 1차시험(절대평가)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현황

연도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	5,238	1,717	32.7%
2022년	4,809	1,795	37.3%
2021년	5,217	1,485	28.4%
2020년	5,221	1,405	26.9%
2019년	4,583	1,667	36.3%
2018년	4,947	1,644	33.2%
2017년	4,926	825	16.7%
2016년	4,351	1,224	28.1%
2015년	4,169	1,507	36.1%
2014년	4,481	802	17.9%

## 2. 최근 10년간 2차시험(상대평가) 접수자, 응시율, 합격률, 커트라인 현황

연도	접수자 (명)	응시자 (명)	응시율 (%)	합격자 (명)	합격률 (%)	커트 라인 (점)	최고 득점 (점)	합격자(%)		
								20대	30대	40대 이상
2023년	3,037	홈페이지 수험자료실 참고하세요								
2022년	3,075	2,150	69.9	340	15.8	55.00	71.67	28.6	39.8	31.6
2021년	2,981	2,114	70.9	343	16.2	53.50	67.92	28.7	41.9	29.4
2020년	3,121	2,229	71.4	325	14.6	51.25	65.50	38.3	41.3	20.4
2019년	3,249	2,290	70.5	328	14.3	50.42	68.75	36.0	43.8	20.2
2018년	3,177	2,232	70.3	409	18.3	50.83	69.25	32.6	44.2	23.3
2017년	2,786	1,892	67.9	381	20.1	44.42	67.89	32.2	45.1	22.7
2016년	3,323	2,180	65.6	470	21.6	50.25	76.17	28.6	44.8	26.6
2015년	3,247	2,097	64.6	501	23.9	44.08	71.67			
2014년	2,739	1,816	66.3	591	32.5	42.33	74.45			

### 3. 1TOP손해사정전문학원의 First & Only

1.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스마트 수험지원 시스템 → 특허청 특허출원(홈페이지 참조)	온라인모의고사 응시시스템(1차과목), 온라인첨삭 전용시스템(2차과목), 완강업로드 서비스, 합격에 최적화한 커리큘럼, 스마트밴드 가입 시스템, 상설상담소 운영 등 1TOP학원에서만 가능한 수험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저렴한 수강료	반값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 최강의 1타 강사진	1타 강사를 찾아 이 학원, 저 학원을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4. 국내 최다 콘텐츠 제공	선택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1타 장학생 제도 운영	장학생 제도를 정례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1topacademy.com](http://www.1topacademy.com) / 뒷표지 QR 코드) 참조

#### 【연간 강의 커리큘럼】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	기본이론	실전 문제풀이					
2차		기본이론			핵심정리 & 기출문제풀이		

#### 4. 시험에 떨어지는 수험생 유형(빼 때리는 불합격 10계명)

- ① 시간을 못내거나 시간을 안내는 사람 - 자격증 취득이 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이다. 우선 순위부터 정해서 시험을 포기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양자택일하라.
- ②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 - 자기성찰과 손해사정사에 대한 vision, 자격증 취득의 목적부터 세워라.
- ③ 공부계획표, 수험전략없이 무턱대고 공부하는 사람 - 네비게이션도 없이 운전하는 격이고 눈감고 운전하는 격이다.
- ④ 공부의지, 공부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 중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 공부의 지속성을 유지하라.
- ⑤ 시험을 앞잡아 보거나 찍어서 공부하는 사람 - 시험앞에 겹혀해질 때 합격한다. 교만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마라.
- ⑥ 이 책 저책, 이 자료, 저 자료, 이 학원 저 학원 강의를 모두 섭렵하려는 사람 - 수집생이 되지 말고 수험생이 되라.
- ⑦ 교재정독 소홀히 하는 사람 - 기본서 다독이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서 다독으로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다져라.
- ⑧ 이해 없이 덮어놓고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서 절대 합격못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라.
- ⑨ 지문 탐독(해석)을 엉뚱하게 하거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 탈락자 중 지문탐독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혹시 난독증이라면 난독증 치료부터 먼저 하라.
- ⑩ 강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 본인만 손해다. 강사를 믿고 강사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합격의 문이 열린다.

※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거의 99.9%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개 항목에만 해당돼도 합격은 쉽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서 시험에 합격하는 유형의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연합모의고사 (1·2·3회차)					
	전국연합모의고사 (1회차)	실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전국연합모의고사 (2회차)	

## 5.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 (1)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구분	1 교시	2 교시
	10 : 00~11 : 20(80분)	11 : 50~12 : 30(40분)
손해사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업법</li> <li>•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li> </ul>	손해사정이론

#### 제2차 시험

구분	시간	과목
재물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회계원리
	2교시(11 : 50~13 : 20,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14 : 20~15 : 50,90분)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11 : 50~13 : 20,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의학이론
	2교시(11 : 50~13 : 20,90분)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14 : 20~15 : 50,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16 : 10~17 : 40,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2)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손해사정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매과목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 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 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 50명
			선발예정인원 : 110명
			선발예정인원 : 340명

※ 선발예정인원은 2023년 제46회 손해사정사 시험 선발예정인원 기준입니다.



## PART 01

## 손해사정이론

<b>CHAPTER 01 위험(Risk)과 보험(Insurance)</b> .....	2
제1절 위험의 개요 · 2	
제2절 위험의 구성요소 · 2	
제3절 위험의 분류 · 6	
제4절 보험대상(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이상적 요건 · 8	
제5절 위험의 측정 · 9	
제6절 위험의 관리(Risk Management) · 14	
제7절 위험의 제어와 관련이론 · 22	
<b>CHAPTER 02 보험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b> .....	24
제1절 보험의 개요 · 24	
제2절 보험의 기본적 특성 · 25	
제3절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 29	
제4절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유사보험) · 32	
제5절 사회보험(4대보험) · 34	
제6절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대체위험전가) · 36	
<b>CHAPTER 03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b> .....	42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및 구성요소 · 42	
제2절 보험계약의 일반적 특성 · 47	
제3절 보험계약 성립의 일반요건 · 53	
제4절 보험계약을 구성하는 기본조항 · 54	
제5절 보험약관의 해석 · 59	
<b>CHAPTER 04 손해보험(Property Insurance)</b> .....	62
제1절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 62	
제2절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65	
제3절 손해보험의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67	
제4절 손해보험의 종류 · 71	
제5절 손해보험의 손해액 · 75	



제6절 보험자 대위(Subrogation) • 79

제7절 보험위부(Abandonment) • 82

## CHAPTER 05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 84

제1절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84

제2절 법률상 배상책임 • 94

제3절 제조물 책임법 • 107

제4절 직접청구권 • 109

제5절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policy) • 111

제6절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 • 112

제7절 재보험(Reinsurance) • 112

## CHAPTER 06 손해사정이론 ..... 118

제1절 보험사고 • 118

제2절 보험기간 • 121

제3절 보상한도 • 124

제4절 소손해공제(Deductible) • 126

제5절 공동보험(Co-insurance) • 128

제6절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clause) • 130

제7절 금반언의 원칙 • 132

제8절 사고처리 협조조항 • 133

제9절 특혜지급 • 134

제10절 대표자 책임이론 • 135

## CHAPTER 07 손해사정제도 및 업무 ..... 136

제1절 손해사정제도 • 136

제2절 손해사정업무 • 138

제3절 손해사정절차 • 140

## CHAPTER 08 보험경영 및 보험회계 ..... 143

제1절 보험요율과 보험료 • 143

제2절 보험계약준비금 • 148

제3절 지급여력과 RBC제도 • 152

제4절 정보의 비대칭 • 153

제5절 언더라이팅 • 156

제6절 보험사기 • 158

**PART 02**

**최근 연도별 기출문제**

CHAPTER 01	위험의 개념과 분류	166
CHAPTER 02	위험관리	177
제1절	위험관리 이론	177
제2절	위험관리 기법	186
CHAPTER 03	보험의 원리	195
CHAPTER 04	사회보험제도와 기타보험	199
CHAPTER 05	대체위험전가(ART)	211
CHAPTER 06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성	215
CHAPTER 07	보험계약의 원칙	221
CHAPTER 08	보험계약의 요소	229
CHAPTER 09	보험계약의 변동	236
CHAPTER 10	보험료 및 약관해석	238
CHAPTER 11	보험사고와 보상책임	243
CHAPTER 12	소손해공제(deductible)	249

CHAPTER 13	공동보험(coinsurance) .....	254
CHAPTER 14	타보험조항, 대위와 위부 .....	259
CHAPTER 15	손해사정의 절차 .....	267
CHAPTER 16	재물보험 손해사정이론 .....	271
CHAPTER 17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이론 .....	275
CHAPTER 18	재보험 손해사정이론 .....	288
CHAPTER 19	기타 조항들 .....	298
CHAPTER 20	보험경영 및 보험회계 .....	301
	제1절 보험료율 · 301	
	제2절 경영효율과 지급여력 · 306	
	제3절 보험계약준비금 · 310	
CHAPTER 21	언더라이팅과 보험감독 .....	315

**PART**

**01**

**손해사정이론**



## 제 1 절 위험의 개요

## 1 위험의 개념

- ① 위험이란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 ② 개인생활이나 기업활동 등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③ 보험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
- ④ 보험은 위험결합(risk pooling) 과 손실분담(risk sharing)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고 이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 제 2 절 위험의 구성요소

위험(risk)은 손인(peril), 위태(hazard), 손해(loss)로 구성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 1 손인(peril, 손해의 원인)

## (1) 의미

손인(peril)이란 '손해(또는 손실, loss)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 💡 예시

화재사고로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은 손해(loss), 그 손해의 원인(손인 peril)은 화재 이다.

## (2) 손인의 형태

- ① 자연적 손인(natural peril) : 태풍, 지진, 화산폭발, 지진, 낙뢰 등
- ② 인적 손인(human peril) : 자살, 사기, 절도, 폭력, 과실 등
- ③ 경제적 손인(economic peril) : 불경기, 파업, 시장요인, 기술진보 등

## (3) 손인의 분류

- ① 담보손인(perils covered,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손인(peril)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담보(보장, 보상, 부보)하는 위험(손인 peril)이다
- ② 면책손인(perils excluded, 면책위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특별히 명시한 손인(peril), 즉 흔히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③ 비담보손인(perils uncovered, 비담보위험)은 처음부터 보험자에게 인수되지 않았던 손인(peril), 즉, 보험자가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명시도, 또한 면책한다는 명시도 없는 위험을 말한다. 질병보험에서 상해는 비담보위험이다.

### 🔍 용어해설

피보험위험(perils insured against) : 보험약관 상 보상하는 손인

## (4) 손인의 방식

- ① 열거위험담보방식(Named Perils Cover Policy) :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손인은 보상하지 않는 방식이다.
- ② 포괄위험담보방식(All Risks Cover Policy) :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손인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 2 위태(hazard, 위험상태, 위험사정)

### (1) 의미

위태(hazard)란 ‘손해를 창출하거나 증가 시킬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위험이며, 손인이 발생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빈도(횟수) 및 심도(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 💡 예시

주유소 옆 흡연 + 화재, 폭발 = 주유소 소실, 가동중단(사용손실)  
 도로위 빙판 + 자동차사고 = 대인, 대물 손해  
 위태(hazard) + 손인(peril) = 손해(loss)

**위험(Risk)**

## (2) 위태의 구분

### ① Physical Hazard(물리적, 실제적 위태)

- ㉠ 의미: 손해 발생의 가능성 또는 기회를 높이거나 손해의 규모를 증가 시키는 물리적인 상태, 즉현재의 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상태를 말한다.
- ㉡ 유형: 가스탱크 부근에서의 흡연, 난로 옆의 휘발유, 노후 가스관, 건물이나 재산의 위치, 건물의 구조나 용도, 사람의 체질, 기질, 잠재적 질병 등이 있다.
- ㉢ 통제방법: 상법 또는 보험약관에서 위험의 변경이라고 할 때 위험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위태를 말하며,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제도 등을 통하여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고 있다.

### ② Moral Hazard(도덕적 위태: 고의(O), 불법적(O))

- ㉠ 의미: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고의적, 불법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보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려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 ㉡ 유형: 보험금 편취 목적의 방화, 살인, 자해,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고에 따른 손해 과장, 청구 서류 위조나 변조 행위 등,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방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확대 등이 있다.
- ㉢ 통제방법: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제도, 약관상 소손해 면책제도, 담보대기기간, 고의사고 면책 등 각종 면책사유, 특약 등을 통하여 도덕적 위태를 통제 하고 있다.

### ③ Morale Hazard(정신적 위태: 고의(X), 불법적(X))

- ㉠ 의미: 도덕적 위태 와 같은 고의적, 불법적 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무관심, 부주의, 방관, 태만 등에 의하여 사고의 빈도나 심도가 커지는 개인의 태도나 습성을 말한다.
- ㉡ 비교

비교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고의성, 불법성	고의성, 불법성 있음	고의성, 불법성 없음
면책여부	면책으로 보험금지급의무 없음	부책으로 보험금지급의무 있음

### ④ Legal Hazard(법률적 위태), Societal Hazard(사회적 위태)

소송을 선호하거나 소송이 쉬운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사회, 혹은 범죄가 많은 사회체제를 가진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법률적(legal), 사회적(societal) hazard가 높다. 이 hazard는 손해 발생원인의 하나인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과 관련이 많다.

## 참고

### 도덕적 위태의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주요 원칙

1. 피보험이익의 원칙
2. 실손보상의 원칙
3. 대위변제의 원칙

- 4. 보험계약의 승낙제도
- 5. 다수계약체결시 고지의무
- 6. 신규교환공제
- 7. 타인의 사망보험시 동의주의
- 8.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9. 고의 중과실 사고 면책
- 10. 자기 부담액

### 3 손해(loss)

#### (1) 의의

손해란 '손인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상, 훼손, 상실, 멸실,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의도되거나 예기치 않은 우연성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2) 손해의 분류

재물손해	직접손해	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1차적 손해(재물의 멸실)
	간접손해	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2차적 손해(영업손실)
책임손해	타인에 대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수익손해	직접손해가 원상회복 되기까지 수익이 감소되는 손해	
비용손해	직접손해가 원상회복 되기까지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인적손해	사고로 전문가의 사망, 장애,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한 손해	

#### (3) 손해와 보험관계

대부분의 재산보험 분야에서 직접손해만 담보하지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도 담보가 가능하다.

#### (4)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초기 해상보험에서는 '근인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 상법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적용하는 추세이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진다.



### 제 3 절 위험의 분류

#### 1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과 주관적 위험(Subjective Risk)

[객관화 여부에 따른 분류]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	주관적 위험(Subjective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위험</li> <li>• 기대손실 과 실제손실의 차이에 의한 위험</li> <li>• 대수의 법칙이 적용 가능</li> <li>• 확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수단의 측정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위험</li> <li>• 막연한 불안감, 걱정, 폐소공포증 등</li> <li>• 객관적인 관찰, 통계 등 평가 및 측정 불가능</li> <li>• 일반적으로 보험의 담보대상이 불가능</li> </ul>

#### 2 순수위험(Pure Risk)과 투기위험(Speculative Risk)

[손실 또는 이익의 기회에 따른 분류]

순수 위험(Pure Risk)	투기 위험(Speculative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의 발생 가능성 없이 손해만을 발생</li> <li>• 화재, 낙뢰, 홍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li> <li>• 사망, 불구,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한 인적손실</li> <li>•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li> <li>•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li> <li>• 제어가 불가능한 위험</li> </ul> <p>예 인적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위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와 이익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li> <li>•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위험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li> <li>• 개별주체가 손해가 나도 사회는 이익이 발생</li> <li>• 대수의 법칙 적용 불가능</li> <li>•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대상이 될수 없음</li> <li>• 제어가 가능한 위험</li> </ul> <p>예 도박, 기업경영,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p>

#### 3 특정·비체계적위험(Particular Risk)과 근원적·근본적·체계적위험(Fundamental Risk)

[영향의 범위에 따른 분류]

특정 위험(Particular Risk)	근원적 위험(Fundamental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개인이나 집단에게 국한되어 존재하는 위험</li> <li>• 위험으로 인한 결과가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위험</li> </ul> <p>예 주택화재, 건물폭발, 귀중품도난, 자동차사고, 상해, 질병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li> <li>• 규모와 심도가 높아 일반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나 기타 위험전가프로그램에 의해 처리 되는 위험</li> </ul> <p>예 경기불황, 인플레이션, 전쟁, 지진, 홍수,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p>

#### 4 정태적위험(Static Risk)과 동태적위험(Dynamic Risk)

[위험의 변화 여부에 따른 분류]

정태적 위험(Static Risk)	동태적 위험(Dynamic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이 지나더라도 위험의 성격이나 발생여부가 변하지 않는 위험</li> <li>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측될 수 있으며 동태적 위험보다 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한 위험</li> </ul> <p>예) 교통사고, 화재, 폭풍우, 지진 등과 같이 성격이나 발생의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의 변동과 함께 달라지는 위험</li> <li>사회에 유익한 영향과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함께 존재</li> </ul> <p>예) 물가, 소비자의 기호, 수입과 지출, 기술 등의 변화</p>

#### 5 분산가능한위험(Diversifiable Risk)과 분산불가능위험(Non-diversifiable Risk)

[보험대상 목적물의 분산 가능에 따른 분류]

분산가능한 위험(Diversifiable Risk)	분산불가능 위험(Non-diversifiable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을 통해 제거 될수 있는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을 통해 제거 될수 없는 위험</li> </ul>

#### 6 보험가능(대상) 위험(부보가능)과 보험불가능(대상) 위험(부보불가능)

[보험인수 여부에 따른 분류]

보험가능(대상) 위험(부보가능)	보험불가능(대상) 위험(부보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순수위험 중 보험인수가 가능한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수위험 중 보험인수가 불가능한 위험과 대부분의 투기위험</li> </ul>

#### 7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금전적 손해 여부에 따른 분류]

재무적 위험	비재무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가 금전적 손해인 위험</li> <li>보험에서 취급하는 대상은 재무적 위험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가 금전적 손해가 아닌 위험</li> </ul>

#### 8 단일 위험과 누적 위험

단일 위험	누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위험이 독립되어 있으며, 다른 위험과 완전히 격리된 위험으로서 다른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위험이 지역적으로 밀집하여 하나의 사고로 동시에 손해를 입게 되는 위험</li> </ul>

## 제 4 절 보험대상(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이상적 요건

[보험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

보험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는 우선적으로 순수리스크를 전제로 하지만, 보험대상이 되는 리스크로서의 필요요건이 추가로 요구 된다.

### 1 우연성(고의성 X)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자체, 사고 발생의 시기, 사고 발생시 초래되는 손해의 크기가 불확정적이어야 하며, 고의적이 아니어야 한다.

### 2 객관성

동질의 위험 집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자신에게만 존재하는 주관적인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 3 순수위험성

보험을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보전 받고자 하는 순수위험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기적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 4 동질성 및 다수성

동질적인 위험이 많아 일정한 대수에 이르게 될 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 손실 예측 및 보험료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5 측정가능성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확률적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고, 손실을 경제적 인 가치(금전)로 측정 가능하여야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 6 손실크기의 가능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크기의 위험이어야 한다. 즉,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이상거대위험 즉, 대재해적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 7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보험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손해의 규모와 손해의 발생 확률이 적정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8 한정적 손해

손해의 원인, 시간, 장소 및 금액에 관하여 한정적이어야 한다. 이는 손해의 사정과 정확한 손해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료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감정적인 가치는 주관적이므로 평가가 불가능하다.

### 참고

#### 보험대상(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요건

- ㉠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순수위험 : 도덕적위태 가능성의 방지 및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
- ㉡ 동질적인 다수의 위험단위 : 보험의 기본 기능인 손실결합 과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 적정한 보험료 계산 가능
- ㉢ 대이변적이 아닌 손실 : 보험사나 인수집단의 지급능력 범위를 초과 하지 않는 위험
- ㉣ 확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손실(발생원인, 발생시점, 발생장소, 손실금액 명확, 측정가능) : 사후적 손실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확한 보험금 지급, 합리적인 손실 보상이 용이
- ㉤ 측정 가능한 손실발생 확률 : 사전적 보험료 산출의 용이성,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에 필요
- ㉥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 보험료가 매우 높아 시장성이 없는 계약은 거러되지 않음  
발생가능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저렴한 보험료 가능

## 제5절 위험의 측정

### 1 의의

위험에 대한 확률 또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손해의 정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을 위험의 측정(risk measurement)이라고 한다. 위험 측정의 목표는 위험을 객관적화 함으로써 위험 관리기법을 선택하는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에는 수리·통계적 지식과 계량적 모형이 활용되는데, 리스크의 정의에 따라 손실의 확률·기댓값·표준편차 등을 기초 정보로 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 2 손해(손실)의 빈도(Frequency)와 심도(Severity)

위험의 크기는 그 위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손해 사고를 일으키는지 즉, 손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횟수(확률)를 의미하는 손해의 빈도(Frequency)와 손해 사고가 발생시에 그 손해의 크기 또는 규모를 나타내는 손해의 심도(Severity)를 곱하여 나타낸다.

(1) 측정요소

- ① 손해(손실)빈도(loss frequency)  
 일정한 기간 동안 손해의 발생이 가능한 횟수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통계적 자료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고발생확률 도출
- ② 손해(손실)심도(loss severity)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규모 또는 크기  
 통계적 자료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고 발생 시 손실의 규모 또는 크기를 도출
- ③ 손해(손실)의 분산  
 빈도와 심도를 통해 통계적으로 도출

(2) 위험의 계량적 측정방법

- ① 확률 : 경험적(사후적), 선형적(사전적)
- ② 기대값 :  $\Sigma(\text{확률} * \text{규모})$
- ③ 표준편차 및 분산 : 예상과 실제의 차이

(3) 위험의 크기

$$\text{위험의 크기}(R) = \text{빈도}(f) \times \text{심도}(s)$$

③ 추정최대손실(PML) · 최대가능손실(MPL)

위험의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위험요소의 두 가지 속성, 즉 위험의 상대적 발생빈도 와 발생규모(심도)에 따라 위험관리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 중에서 손실의 규모 측정기준으로 대표적인 기준이 추정최대손실(PML) · 최대가능손실(MPL)이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PML (1 사고당 추정최대손실)이 매우 중요하다.

[손실의 규모(심도) 측정 기준]

기 준	내 용
추정최대손실(손해) (PML : Probable Maximum Loss)	실제 발생 가능한 수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규모 (확률적으로 유의수준 이내의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통상적 예상 손실)
최대가능손실(손해) (MPL : Maximum Possible Loss)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최대의 손실 규모 (최대한 측정 가능한 손실, 존속기간 중 한번 발생할지 모를 최대 손실)

## 참고

## 추정최대손실(손해) (PML : Probable Maximum Loss)

## 1. 정의

추정최대손실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담보위험이 야기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추정액을 말한다. 한편 최대가능손실(MPL : Maximum Possible Loss)은 통상적인 조건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말한다.

## 2. 통상적인 조건

통상적인 조건이란 사고발생시 손해범위를 한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예 화재발생-건물 거주자 소방 활동-소방차 현장 도착-건물 소방시설 작동 한다는 전제 이다.

## 3. 기능

추정최대손실 또는 최대추정손실 금액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고 적절한 보험료 산출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 4. 이용

- ① 미평가보험 : 재물보험은 일반적으로 미평가보험 운용 되나, 최대추정손실을 이용하면 기평가보험 이 된다. 다만, 평가비용 자체가 고액이므로 평가비용에 비하여 보험료가 고액인 보험에만 이용된다.
- ②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를 결정할 때 이용되어서, 적절한 보험금액과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 ③ 공사보험, 조립보험 : 보험가액 산정에 이용이 된다.

## 5. PML · MPL의 비교

P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자가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최대손실</li> <li>•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수치</li> <li>• 표준편차에 비례하며 위험선호도에 반비례</li> <li>• 손실방지 또는 경감시설의 장치 및 기구가 제대로 작동</li> </ul>
M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손실</li> <li>•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인 수치</li> <li>• 손실방지 또는 경감시설의 장치나 기구가 제대로 작동 안함, 최악의 조건</li> </ul>

## 4 위험의 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

측정된 위험의 크기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Cost)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위험의 크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거수해야만 위험 단체를 유지할 수 있고 보험사업 영위가 가능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험에 대한 전체보험료(Premium)가 되고, 위험 개체수로 나누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위험보험료'가 산출된다.

$$\text{위험의 크기(Risk)} = \text{빈도}(f) \times \text{심도}(s) = \text{위험의 비용(Cost)} = \text{위험보험료(Premium)}$$

손실 발생 가능한 빈도(f) 및 심도(s)와 위험의 크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차함수의 양의 곡선 형태로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므로 손실통제 기법 중 '손실예방'이나 '손실경감'을 할 수 있다면 위험의 크기(Risk)가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비용(보험료)을 낮출 수 있다. 이로 인한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것이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필요한 이유이며, 목적이 된다.

## 5 확률변수(random variable)와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 ① 확률변수(random variable)

실험의 결과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주사위를 1회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확률변수(X)가 되고, X는 주사위 1~6까지의 값을 가진다.

### ②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결과와 그 결과의 가능성을 도표 등으로 요약한 것을 의미한다.

[주택화재 사고발생확률 과 예상되는 손해액의 확률분포]

사고발생확률	예상되는 손해액
0.5	0
0.1	1000
0.2	200
0.2	500

## 6 확률변수(X)의 평균 · 기대손실(Expected loss)

### ① 평균

확률변수(X)의 평균은 통상 기대값(Expected value)이라고 하며, 손해사정에서는 기대손실(Expected loss)에 해당한다.

위 <표>의 기대손실(EI)을 구하면,

$$EI = (0.5 \times 0) + (0.1 \times 1000) + (0.2 \times 200) + (0.2 \times 500) = 240$$

그러므로 주택화재에 대해 손해가 예상되는 평균은 240이며, 이 말은 보험자가 얻게 되는 위험보험료의 총합이 240이라는 의미이다.

### ② 분산

분산은 각 측정값의 중심, 즉 평균(기대손실)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산이 0에 가까울수록 사고에 의한 발생 가능한 손실은 평균에 가깝다는 것이고, 분산이 클수록 손실의 범위가 평균에서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집중경향치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것으로 평균은 값의 평균을, 중앙값은 빈도의 중간을, 최빈값은 최고 빈도를 의미한다.

### ④ 산포도

사고발생확률과 손실간의 측정값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흩어짐의 정도) 나타내는 척도이다.

## ⑤ 비대칭도

사고발생확률과 손실간의 분포의 정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좌우가 같은지를 보는 것이다.

## ⑥ 첨도

사고발생확률과 손실간의 분포 모양이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높은 첨도, 보통 첨도, 낮은 첨도로 구분하는데, 보통 첨도가 정규분포의 첨도이다.

## 7 위험과 보험의 관계

### (1) 위험결합(Risk Pooling)

## ① 결합약정(pooling Agreement)

동질한 위험의 보유자간 손해의 균등부담을 의미한다.

## ② 효과

㉠ 예상되는 총비용(기대값)은 변화 없지만, 극단적인 손해발생확률은 감소한다.

㉡ 경우의 수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유자간 위험비용이 평균에 근접하게 되어 1인당 위험부담 비용은 하락한다.

### (2) 보험료의 결정원리

## ① 대수의 법칙

관찰 대상의 수가 많아지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예상확률에 근접해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고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1인당 보험료의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②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

'위험보유자의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효익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위험보유자에게 전가 받은 보험료의 합이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 6 절 위험의 관리(Risk Management)

1 개요

(1) 위험관리의 개념

① 의의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통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경제 활동을 말한다.

② 대상

모든 위험이 위험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순수위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③ 보험사업에서의 위험관리

보험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위험을 인식, 분석, 평가하여 그러한 위험의 발생원인과 발생결과에 대하여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에서의 위험관리의 목적

① 손해발생 전의 목적

- ㉠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의 빈도와 심도를 통제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
- ㉡ 예상 손실보다 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economy)
- ㉢ 예기치 않은 손실발생 및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reduction in anxiety)
- ㉣ 손실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의 준수(meeting externally imposed obligation)
- ㉤ 보험으로 전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
- ㉥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 계약 체결 가능

② 손해발생 후의 목적

- ㉠ 개인이나 기업의 생존과 활동의 연속성 제고(continuity of operations)
- ㉡ 수익의 안정(earning stability)
- ㉢ 지속적인 성장(continued growth)
- ㉣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
- ㉤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행

참고

손해발생 전의 목적	손해발생 후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목표달성</li> <li>• 불안의 경감</li> <li>• 각종 규정의 준수 및 법적의무의 이행</li> <li>• 리스크에 대한 안심제고</li> <li>• 사회적 책임의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요소의 확보</li> <li>• 영업의 지속성</li> <li>• 수익의 안전성</li> <li>• 지속적인 성장</li> <li>• 사회적 책임의 수행</li> </ul>

### (3) 위험관리의 효과

적극적인 위험관리기법을 시행하면,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위험의 위험분포도상 위험분포의 범위가 좁아지고 최대추정 손해액의 크기도 감소한다. 이는 사고확률분포가 중앙값으로 집중하는 정도가 더 커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 사고율에 대한 예측도가 높아져, 집중된 범위에 대한 관리만으로도 적절한 위험대비가 되므로 위험대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2 위험관리의 과정 및 절차

- (1) 위험의 발견과 확인(인식)
- (2) 위험의 분석과 평가
- (3)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 (4) 위험관리의 수행 및 수정

### (1) 위험의 발견과 확인(인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비재무적리스크 등으로 분류하여 위험을 인식하고 찾아내는 활동이다.

[위험인지 기법]

종 류	내 용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잠재하는 위험을 검색하는 방법
설문지(questionnaire) 방법	양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 인지하는 방법
장부 분석 방법	재무 및 회계 장부를 통해 위험을 인지하는 방법
연역적(deductive reasoning) 방법	회피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사고나 손해를 정하여 역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
흐름도(Flow chart) 방법	활동의 예상 경로와 시간을 따라 발생 가능한 원인을 나열하여 위험을 인지하는 방법
현장조사 방법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찾는 방법

### (2) 위험의 분석과 평가

발견된 위험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① 손해의빈도 :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의 수
- ② 손해의심도 : 하나의 사고가 초래하는 손해의 크기
- ③ 총손해액 :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합계액
- ④ 지급시기 : 사고발생 시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제간의 시간적 차이
- ⑤ 최대추정손해액 : 통상적인 조건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 최대손해의추정액

### (3)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 ① 위험관리기법을 선택할 때는 위험의 특성과 사고발생시의 경제적인 영향(사고빈도 및 심도)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선의 기법을 선택한다.
- ② 위험관리기법은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 2개 이상의 기법을 병용하기도 한다.
- ③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위험 통제(리스크 통제, risk control)	위험 재무(리스크 재무, risk financing)
1. 위험회피(risk avoidance) 2. 손신통제(loss control) 3. 위험요소의 분리(risk segregation) 4. 계약상의 전가(contractual transfer, 책임전가 계약)	1. 위험 보유(자가보험) 2. 위험 전가(보험)

[위험보유와 전가를 동시에 행하는 위험재무기법]

공제액(deductible)과 공동보험(co-insurance) 등은 손실의 일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보험을 통해 보험자에게 전가한다.

- 공제액(deductible)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손해는 직접 부담
- 공동보험(co-insurance) : 전체 손실이 일정 비율을 부담

### (4) 위험관리의 수행 및 수정

- ① 채택된 위험관리기법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다.
- ② 평가된 결과가 예상목표 및 결과와 비교하여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참고

##### 위험관리 과정

- ① 위험관리 목적의 결정(determination of objections)
- ② 위험의 확인(identification of risks)
- ③ 위험의 측정(evaluation of risks)
- ④ 최선의 위험관리방법의 선택(selection of the best methods)
- ⑤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수행(implementation)
- ⑥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평가 및 재검토(evaluation and review)

### 3 위험관리 기법

위험을 인지하고 인지된 위험을 측정 및 평가하였다면, 위험을 관리하는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 위험관리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손해의 발생빈도나 심도를 통제하여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위험통제(risk control)기법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무적인 손실에 대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서 위험재무(risk financing)기법이 있다.

위험통제기법을 통하여 위험 발생의 빈도와 심도를 통제하게 되면 위험재무기법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 (1) 위험통제 기법(risk control)

##### (가) 목적

- ㉠ 손실을 감소(빈도와 심도의 감소화)
- ㉡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 (나) 기법

##### ① 위험의 회피(risk avoidance)

손해가 생길 상황을 원천적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기법이다. 위험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든 위험을 다 회피할 수는 없으며, 위험을 우려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업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도 있다.

##### ② 손실통제(loss control)

손실통제 활동은 손해의 빈도와 심도를 감소시키는 활동으로서 손실예방(loss prevention)와 손실경감(loss reduction)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손실통제는 손해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손실예방(방지, loss prevention)	손실의 발생 가능성 또는 발생 빈도를 줄이려는 것 예) 음주단속, 작업안전수칙, CCTV, 블랙박스
손실경감(감소, loss reduction)	손실의 발생 규모를 줄이려는 것 예)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차의 에어백, 안전벨트

##### ③ 위험요소의 분리(risk segregation, 분리, 복제, 분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장소적으로 분산하거나, 운송물을 여러 시간대로 나누어 운송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위험의 분리(risk separation) 방법이다.

중요한 문서나 기록(설계도, 자료, 장부 등),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복제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으로서, 원본이 소실되거나 파손 시에 복원하여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위험의 복제(duplication) 방법이다.

투기적 위험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법으로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한 부문에서 손실

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이득이 생겨 전체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위험을 hedge하는 것이 위험의 분산(diversification) 방법이다.

④ 계약상의 전가(contractual transfer)

계약에 의한 전가는 위험통제기법 및 위험재무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위험통제기법으로는 손실발생의 법적인 책임, 즉 손실발생의 불확실성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위험재무기법으로는 손실발생에 따른 재무적인 손실의 불확실성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 위험재무 기법(risk financing)

(가) 목적

사고의 발생으로 불확실한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고, 개인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나) 기법

① 위험보유(risk retention)

위험보유는 재무적 손실을 개인이나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에는 경상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적립금을 이용하는 방법, 자가보험(Self insurance)을 이용하는 방법, 종속보험사(Captive insurance)를 이용하는 방법,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우발적 손실을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것
- 손실의 규모가 적고 손실발생의 빈도도 적은 경우에 가장 적합한 관리방법

㉠ 경상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재무상태가 튼튼한 경우, 손실의 빈도가 많고 손실규모가 작은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규모가 작거나 재무상태가 튼튼하지 못한 기업이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자발적인 손실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보상비용의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기업내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사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 적립금을 이용하는 방법 : 손실을 경상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 보유의 방법으로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미리 적립금을 설정하거나 기금을 마련해 두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 자가보험(self insurance)을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자가보험의 의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는 방법으로서, 적립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나 보험제도의 방식을 따른다. 대수의 법칙 등을 통해서 보험기금을 설정하고 손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자가보험의 필요성	동질적인 위험을 다수 보유한 경우, 적절한 보험자를 찾지 못하거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기금을 적립할 능력을 보유해야 함.
자가보험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리스크(위험)는 보험에 부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li> <li>•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 적용되어야 함.</li> <li>• 보험기금이 건전하게 적립되어 있어야 함.</li> <li>• 손실통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li> <li>• 보험전문인력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함.</li> </ul>
자가보험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가보험료 등 보험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li> <li>• 보험기금의 재투자로 인한 추가이익이 가능</li> <li>• 위험보유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적극적인 위험관리활동이 촉진되어 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li>• 보험에 부보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노하우를 집적할 수 있음.</li> </ul>
자가보험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하는 보험기금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서 심도가 큰 위험은 보수가 불가능함.</li> <li>• 보험자의 위험관리서비스(손실방지 및 손실감소), 클레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li> <li>• 자가보험을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함.</li> </ul>

㉡ 종속보험사(captive insurance)를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캡티브의 의의	캡티브(Captive insurance)는 자신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단체나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험자회사, 즉 종속보험사를 말함. 자가보험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큰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모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임.
캡티브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기업이 하나인 경우를 단일 캡티브, 소유자가 어떤 단체이거나 두 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를 그룹 캡티브라 함.</li> <li>• 순수하게 모기업의 고유위험만을 취급하는 순수 캡티브와 모기업이나 모기업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위험도 취급하는 광의의 캡티브로 구분할 수 있음.</li> </ul>
캡티브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즉, 보험가입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료 및 준비금에 대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업계의 평균손실률보다 낮은 위험률을 보유한 기업은 낮은 보험료로 위험전가가 가능함.</li> <li>• 모기업의 사정으로 외부로부터 기업성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외부보험이 존재하더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li> <li>• 캡티브를 통해 재보험 가입이 가능</li> <li>• 광의의 캡티브의 경우 모기업만이 아닌 다른 사람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을 인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구분	내용
캡티브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캡티브의 설립은 최소한의 자본금 및 잉여금,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이 소요되므로 모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줌.</li> <li>• 위험관리서비스, 클레임처리 서비스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함.</li> <li>• 해외물건 담보의 경우 각 지역의 상이한 보험법규 및 외환통제정책에 적응해야 함.</li> </ul>

- ㉞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손실 발생 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의 전가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기업은 차입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며 손실전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기업에게 있으므로 위험의 보유라고 한다.

구분	내용
약정용자한도계약 (commitment line)	사전에 약정한 기간 및 용자규모의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금융기관이 용자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건형 약정용자한도계약 (contingent commitment line)	기업 등에 특정한 조건이 발생하면(손실 발생) 사전에 약정한 금리로 특수목적회사가 용자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험보유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의 절약 : 보험가입시 필요한 수수료, 손실통제경비, 세금, 기타 경비에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li> <li>• 손실방지의 장려 :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손실방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li> <li>• 자금운용의 이점 : 자금을 직접 보유하는 관계로 보험금을 내는 보험가입의 경우보다 자금 운용 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밖의 손실 가능성 : 기대이상의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li> <li>• 세금 등 기타 비용의 증가 가능성 : 보험료부분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위험 보유시에는 세금혜택이 줄어든다.</li> </ul>

② 위험전가(risk transfer)

보험계약으로 전가	비보험적 전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유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사적계약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 방법 예) 임대차계약, 하도급계약 등

- ㉟ 보험계약으로 전가(transfer through insurance) :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신이 보유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 ㉠ 계약에 의한 전가(contractual transfer) :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손실 발생에 따른 재무적인 손실의 불확실성을 제3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책임인수약정(Hold-harmless agreement 또는 Indemnity agreement, 무해협약, 면책계약, 피해보상책임면제계약)이라 한다. 예를 들면, 물품공급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운송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이 약정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 손실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계약이다.
- ㉡ 가격위험의 헤징(hedging price risks)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곡물, 석유 등 실물을 보유한 자가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 가격이 변동할 위험을 선물거래소 등을 통해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투기거래자에게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는 기법이다.
- ㉢ 법인 설립에 의한 위험의 전가 : 개인 기업의 경우 채권자에 의해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어 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해 주주 개인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으므로 기업 운영 위험의 일부를 다른 주주에게로 전가하게 된다.

[비보험적 위험전가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위험에 관련된 보험 상품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전가방법을 사용하면 손쉽게 처리 될 수 있다.</li> <li>• 위험전가방법은 보험가입보다 보험비용 면에서 적게 들 수 있다.</li> <li>•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위험의 경우 뛰어난 손실통제능력을 가진 자에게 전가된다면 쉽게 처리될 수 있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전가 계약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li> <li>•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li> <li>• 위험을 전가 받은 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i> </ul>

[위험관리방법으로서 보험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 지속, 생계유지가 가능 하다.</li> <li>• 불확실성 감소 : 사업범위 확장, 걱정과 불안이 제거 된다.</li> <li>• 보험자로부터 위험관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li> <li>• 납부하는 보험료의 법인세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자의 사업비에 총당하는 비용이 추가 부담 된다.</li> <li>• 보험은 그 체결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 된다.</li> <li>• 위험관리자가 손해통제에 소홀해지기 쉽고, 도덕적 위험이 야기 되기도 한다.</li> </ul>

**(3) 최적의 위험관리기법의 선택**

위험의 빈도와 심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기법을 선택 한다.



[최적의 위험관리방법 선정]

구분		발생빈도	
		낮음	높음
손실규모(심도)	작다	위험보유 : 자가보험	손실통제 + 위험보유
	크다	위험전가 : 보험가입 + 손실통제	위험회피

## 제 7 절 위험의 제어와 관련이론

### 1 엔지니어링법

엔지니어링법이란 주목적이 위험환경의 외형적 측면을 조절하여 손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손해의 크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재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빌딩의 건축구조, 위치, 주변환경, 그리고 화재방지 장비(조기경보장치, 스프링클러, 급수장비 및 저수량, 소화기 등 소화장비 및 인력)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공장의 배치, 기계 안전장비, 설비의 관리, 조명시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강조한다.

### 2 인간공학법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손해통제의 방법으로서 엔지니어링법을 발전시켰지만, 결국 인간이 설비, 물질, 그리고 환경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인간공학법을 경시할 수 없게 한다. 인간의 복잡한 본성은 행동양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심리적 및 사회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손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실제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방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운전자나 작업장에서의 안전교육은 손해감소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교육방법의 좋은 예이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이 적절한 행동양식을 유도하는데 활용된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손실통제의 기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하인리히(H.W. Heinrich)이다. 하인리히는 손실통제의 기본 방향을 기계적 접근과 인간적 접근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적 접근 방법을 중요시 하여 도미노이론을 전개하였다.

### 3 도미노이론(Heinrich)

도미노이론이란 대부분의 재해 사고는 인간의 불안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며 사고의 발생은 일련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건은 ① 사회적 환경, ② 인간의 과실, ③ 불안정한 행위(위태), ④ 사고, ⑤ 손실이다. 따라서 사고의 예방은 도미노 요소의 하나를 제거하여 도미노의 연쇄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태를 제거하는 것이

다. 위태는 인간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행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필수적인 이론이다.

- 재해사고가 1) 사회적 환경, 2) 인간의 과실, 3) 위태, 4) 사고, 5) 손실
- 연쇄관계를 차단 : 위태를 제거
- 위태는 인간의 과실로 인해 발생
- 올바른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필수적

#### 4 에너지방출이론(Haddon)

에너지방출 이론이란 사고는 특정의 구조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됨으로써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사고예방이나 손실감소는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와 그것을 방출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방출 이론은 도미노 이론과는 달리 사고의 원인으로서 인간의 행동보다는 구조적 또는 물리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론이다.

- 사고는 특정의 구조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됨으로써 발생
- 사고예방이나 손실축소는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와 그것을 방출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 구조적 또는 물리적 요인을 더 중요시

#### 5 사슬개념

사슬개념이란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련의 사건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제어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슬개념의 첫 번째 고리는 그 사고의 근원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충격흡수범퍼 시스템, 내화구조의 건물 신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고리는 현존하는 hazard를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통해 제어하는 것이다. 건물이나 자동차의 정기검사나 안전실무 지침 등의 준수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고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의 최소화를 통해 제어를 하는 것이다. 건물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자동차의 에어백·안전벨트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사슬고리는 효과적인 구조 활동에 의한 제어로서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종업원의 재활이나 화재가 난 창고의 제품 중 비교적 양호한 제품을 신속히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1) 사고의 근원을 제어하는 것
- 2) 현존하는 hazard를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통해 제어하는 것
- 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의 최소화를 통해 제어를 하는 것
- 4) 효과적인 구조 활동에 의한 제어를 하는 것

## 제 1 절 보험의 개요

## 1 보험의 정의

## (1) 상법상의 정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편 통칙편 제638조-보험의 의의).

## (2) 일반적인 보험의 정의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그 해당하는 위험을 결합하여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 계산을 통해 산술적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모아 공동 자산을 마련하였다가 우연한 손해가 발생한 각 경제주체에게 보험금액을 제공하여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다양한 보험의 정의]

- 보험이란 위험의 전가·결합을 통하여 우연한 재무적 손실에 대한 위험, 즉,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 보험이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모여 일종의 공동기금을 마련한 후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우연한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 공동기금에서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 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의 경제주체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을 다수의 평균 손실로 낮추는 제도이다.
- 개별경제 주체 : 보험이 없는 경우 존재하였을 불확실한 대규모의 재정적 손해를 확실한 소규모의 비용(보험료)으로 대체하는 경제적 장치이다.
- 사회적 측면 : 손해가 예측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수의 동질위험을 하나의 단체에 결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경제적 장치
- 법률적 측면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

## 제2절 보험의 기본적 특성

### 1 위험의 전가와 결합

#### (1)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

위험보유자가 자신의 위험을 타인에게 넘겨 사고 발생의 결과(손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라고 하는데, 위험의 전가에는 보험적 전가와 비보험적 전가(사적인 계약)가 있다. 보험적 전가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부하고,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위험의 결합과 분산(risk pooling, risk sharing)

보험자는 위험보유자로부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전가 받아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위험단체 구성원 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여 손해분산기금을 조성한다(risk pooling). 또한, 결합된 위험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결과(손해)를 상호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risk sharing). 즉, 위험의 결합이란 동질의 위험을 보유한 자들 간의 손해분담약속 또는 위험결합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 (3) 위험결합의 효과

- ① 손해 발생 경우의 수가 다양해진다.
- ② 극단적인 손해발생의 확률이 줄어든다.
- ③ 위험보유자 1인이 부담하는 위험률은 집단전체의 평균위험률로 대체된다.
- ④ 평균적인 사고발생 확률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 보험의 중요하고 필수적 요건이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와 위험의 결합(risk pooling)이다.
-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따른 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 시킨다.
- 위험의 결합을 통하여 발생된 손실을 다수의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 시킨다.
- 위험의 결합은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을 충족시키는 전제조건이 된다.

### 2 우연한 손실의 발생(fortuitous losses)

개개인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우연한 손해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보험은 우연한 손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필연적인 사고(성질, 하자, 자연소모 등)는 담보하지 않으며 손실발생이 불확실한 위험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연한 손해는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하며, 발생시기가 언제일지 불확실해야 하며, 발생하는 손해의 크기가 불확실해야 한다.

### 3 실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Indemnification)

손실보상이란 보험금 지급 또는 손상된 재산의 수리나 대체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손실 발생 이전과 근접한 경제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보험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실제 발생한 손실만큼 보상해 준다는 이러한 실손보상의 원리는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원리는 정액지급의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성격을 가지는 상해보험에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된다.

### 4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

동질의 불확실한 위험을 가진 구성원을 집단으로 관찰할 경우, 그 사고는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데 이 때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사고발생 예측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위험결합의 구성원이 늘어나 일정한 대수에 이르게 되면, 사고 발생 중앙값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표준편차와 비대칭도가 감소하여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중심극한의 정리), 이를 통해 사고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대수의 법칙에 의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 ① 개인에게 우연한 손해이지만, 이를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관찰하면 정량적으로 특정 손해를 측정할 수 있다.
- ② 0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암 발병률은 387.8명이다. 이를 통해 누가 암에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암이 발병하는 확률은 다수의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③ 보험가입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험자는 보다 근사하게 미래의 각 위험들을 예측할 수 있다.

### 5 수지상등의 법칙(balance of earning and expenditure)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개별수지 균형에 관한 미시적인 원칙으로서 개개의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자의 수지균형에 관한 거시적인 원칙으로서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함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수입인 전체보험료(보험을 가입한 개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합계)의 크기는 지출인 전체보험금(보험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의 합계)의 크기와 같아야 보험 사업이 영위될 수 있다는 보험사업 경영상 필요한 원칙이다.

- ① 보험 계약 내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존재한다.
- ② 수지상등의 법칙이라 함은 보험을 가입한 개개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합계와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각 보험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의 총합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③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np = rz$$

np란 보험가입자수(n)에 각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p)를 곱한 값을 말한다. rz란 보험사고 발생수(r)에 각 보험사고 발생시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z)을 곱한 값을 말한다.

※ 전체 보험료(np) = 전체보험금액(rz)가 된다.

(n : 전체 보험가입자 수, p : 개인이 부담할 보험료, r : 사고발생 수, z : 사고발생 시 평균보험금)

즉,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원칙이다.

## 6 금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benefit the principle of equal benefit in return)

개개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각 보험계약자가 지급할 보험료액(급부)은 그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받을 보험금액(반대급부)에 대한 기대치와 균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금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 또는 렉시스(Lexis)의 원칙이라고 하며, 개별적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각 보험계약자 1인당 지불할 보험료는 그가 속한 동질의 위험집단 안에서 발생할 총 보험금액(손해액)을 전체의 계약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개인이 부담할 보험료}(p) = \text{사고발생 시 평균보험금액}(z) \times \text{사고발생 확률}(w)$$

순보험료(p)는 각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보험금(z)에 보험사고 발생확률(w)을 곱한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p = wz$$

- ① 개별적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각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순보험료의 금액이 각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② 각각의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당 보험계약자가 (보험대상이 되는) 위험에 대응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를 실현코자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7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의 관계

- ①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원칙이고, 수지상등의 원칙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원칙이다.
- ② 수지상등의 원칙에 적용되는 수식인,  $np=rz$ 를 보험료(p)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p=(r/n)z$ 로 정리 가능하다. 여기서 (r/n)은 보험가입자수(n) 중 사고발생 수(r)를 나타내며 이는 곧 사고발생확률(w)를 나타낸다.  
즉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수지상등의 원칙), 미시적으로 볼 것인가(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법칙이 존재한다.

###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

'위험보유자의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효익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시적 측면

###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위험보유자에게 전가 받은 보험료의 합이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거시적 측면

## 참고

손해보험에서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함께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리, principle of indemnity)을 기본원리로 말한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핵심적인 기본원리로서 손해보험이 도박과 구분되는 특징이며, 생명보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원리는 아니다.

## 참고

### 보험대상(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요건

- ㉠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순수위험 : 도덕적위태 가능성의 방지 및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
- ㉡ 동질적인 다수의 위험단위 : 보험의 기본 기능인 손실결합 과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 적절한 보험료 계산 가능
- ㉢ 대이변적이 아닌 손실 : 보험사나 인수집단의 지급능력 범위를 초과 하지 않는 위험
- ㉣ 확정적이고 측정가능한 손실(발생원인, 발생시점, 발생장소, 손실금액 명확, 측정가능) : 사후적 손실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확한 보험금 지급, 합리적인 손실 보상이 용이
- ㉤ 측정 가능한 손실발생 확률 : 사전적 보험료 산출의 용이성,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에 필요
- ㉥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 보험료가 매우 높아 시장성이 없는 계약은 거래되지 않음  
발생가능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저렴한 보험료 가능



## 제3절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 1 보험의 순기능(긍정적 측면, 사회적 기능)

#### (1) 손실 보상

보험은 사고로 손실을 입은 경제주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발생 이전의 경제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이는 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위험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한다.

#### (2) 피해자(제3자) 보호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측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 줌으로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외에 피해자(제3자)의 손해까지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한다.

#### (3) 불확실성 감소

개인 또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불안이 제거 또는 경감되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4) 위험관리 향상

보험자는 손실통제에 대한 전문인을 고용하고 이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손실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지원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손실통제활동은 보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키게 된다. 또한, 보험료율에서도 할인 할증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자들이 스스로 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 (5)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개인 또는 기업 등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실발생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게 되며, 여유 자금으로 가계 생활수준 향상이나 기업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 (6) 신용의 수단(신용증대)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증권, 운송중인 목적물을 선하증권으로 매매할 때 해상적화보험증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은 채권 회수에 대한 채권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며, 보험이 신용을 증빙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7) 투자자금의 원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과의 차이로 일정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머물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자본축적이 가능하게 되어 주식, 채권, 대출 등 투자자금으로 활용하여 산업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8) 위험의 국제적 분산**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는 재보험 등을 통해 그 위험을 국제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거대 위험의 인수도 가능하게 한다.

**2 보험의 역기능(부정적 측면, 사회적 비용)****(1) 사업비용의 발생**

보험 사업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손실만 발생하겠지만,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순손실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비용을 발생시키며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가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업비용에는 모집인의 판매수수료, 일반 경비, 보험료에 따르는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보험사기의 발생**

보험은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 보험사기는 도덕적 위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 손실의 규모를 과장되게 청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며 보험료의 인상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보험범죄가 지속되면, 올바른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 되면 위험단체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도산하게 될 것이다.

**(3) 위험 관리에 소홀**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해 주기도 하지만, 위험 관리에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의 빈도수가 증가하거나 손해액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